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39
----------	-----

제출일자 : 2012. 10.

제 출 자 : 중구청장

1. 개정이유

91년 4월 수수료 책정 이후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1년간 동결되어온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울산광역시에서 일괄 추진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현실화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구민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수정(안 제2조)

나.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안 별표1)

○ 수거식화장실(18ℓ당) : 177원 → 302원(64.1%) ↑

○ 개인하수처리시설 - 기본요금(750ℓ까지) : 11,045원 → 15,370원(36.7%) ↑

- 초과요금(매100ℓ당) : 772원 → 1,090원(36.5%) ↑

다.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징수기준 인상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안내서 및 촉구서 서식 정비(안 별지제1호, 별지제2호)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사항을 정비

3.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4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경제일자리과 협의 : 2012. 7. 13.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라. 입법예고 사항 :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2012. 7. 25부터 8. 23까지 공보 및 인터넷을 통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 「하수도법」 ”으로 하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하며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시설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시설”로 한다.

제4조 중 “법”을 “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규칙”을 “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7조제5항제2호 중 “제80조제3항제17호”를 “제80조제4항제17호”로 한다.

제11조 중 “영”을 “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별표1, 별지제1호서식 및 별지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수수료의 징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수거식 화장실

부과기준	수 수 료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분뇨처리수수료
18ℓ 당	302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2.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구분 (부과기준)	수 수 료	
	분뇨수집·운반수수료	분뇨처리수수료
기본요금 (750ℓ 까지)	15,370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초과요금 (매 100ℓ 당)	1,090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비고 : 1. <삭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청소이행 안내서(제6조제2항 관련)

보내는 곳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전 화 : 052)290-3840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이행

받는 곳

귀하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이행 안내서

시설소재지				
관리번호	청소기한	시설용량	인용 (m ³)	
청소신청 업 체				

◎ 귀하께서 소유·관리하시는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시기가 도래되었기에 통지하오니 청소업체에 청소신청 하시어 청소기한까지 반드시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청소증명서**는 청소 후 반드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수에 따라 각각 교부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안내**

◦ 요금은 실제 수집·운반한 분뇨와 청소과정에서 수집한 오니(오수포함) 양에 따라 지불하여야 합니다.

☞ 청소 시 차량 뒷쪽의 눈금을 확인하여 청소한 용량에 따라 청소요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산정기준 : 기본요금(0.75m³까지-16,120원), 초과요금(1m³초과마다-11,900원)

☞ 요금계산법 : 청소요금=16,120원+(청소용량-0.75)×11,900원

◦ 요금안내표

단위 : 용량(m³), 금액

(원)

용량	금액	용량	금액	용량	금액	용량	금액	용량	금액
0.75	16,120	2.5	36,940	4.5	60,740	7.0	90,490	9.0	114,290
1.0	19,090	3.0	42,890	5.0	66,690	7.5	96,440	10.0	126,190
1.5	25,040	3.5	48,840	5.5	72,640	8.0	102,390	11.0	138,090
2.0	30,990	4.0	54,790	6.0	78,590	8.5	108,340	12.0	149,990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건설방재과 치수팀(☎ 290-38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이행 촉구서(제6조제2항 관련)

보내는 곳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복산동)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전화 : 052)290-3840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이행

받는 곳

귀하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이행 촉구서

시설소재지			
관리번호	청소기한	시설용량	인용 (m ³)
청소신청업체			

◎ 귀하의 건축물에 설치·관리중인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청소토록 1차 통지한 바 있으나, 기한내 청소를 실시치 않아 촉구하오니 상기 청소업체에 신청하시어 청소기한까지 반드시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연 1회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만약 기한 내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증명서는 청소 후 반드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수에 따라 각각 교부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안내**

◦ 요금은 실제 수집·운반한 분뇨와 청소과정에서 수집한 오니(오수포함)양에 따라 지불하여야 합니다.

☞ 청소 시 차량 뒷쪽의 눈금을 확인하여 청소한 용량에 따라 청소요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 요금산정기준 : 기본요금(0.75m³까지-16,120원), 초과요금(1m³초과마다-11,900원)

☞ 요금계산법 : 청소요금=16,120원+(청소용량-0.75)×11,900원

◦ 요금안내표

단위 : 용량(m³), 금액

(원)

용량	금액	용량	금액	용량	금액	용량	금액	용량	금액
0.75	16,120	2.5	36,940	4.5	60,740	7.0	90,490	9.0	114,290
1.0	19,090	3.0	42,890	5.0	66,690	7.5	96,440	10.0	126,190
1.5	25,040	3.5	48,840	5.5	72,640	8.0	102,390	11.0	138,090
2.0	30,990	4.0	54,790	6.0	78,590	8.5	108,340	12.0	149,990

※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건설방재과 치수팀(☎ 290-384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하수도법」 ----- ----- 시행령 ----- ----- 시행규칙 ----- -----.</p>
<p>제2조(정의) 1. ~ 2. (생략)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u>시설로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u>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1. ~ 2. (현행과 같음) 3. ----- ----- 시설 ----- -----.</p>
<p>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 구청장은 <u>법</u> 제41조제2항 및 <u>규칙</u>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p>	<p>제4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제외지역) -----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p>
<p>제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생략) ②제1항 <u>규정에 의한</u>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영업대상을 정하거나 필요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제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①(현행과 같음) ② -----에 따른 ----- -----.</p>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p> <p>① (생략)</p> <p>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청소이행 안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소기한 30일 전에 발송하고, 기한 내 청소를 이행하지 <u>아니한</u>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안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않은</u> ----- -----.</p>
<p>제7조(분뇨 수집·운반의 대행)</p> <p>①~④ (생략)</p> <p>⑤ 1. (생략)</p> <p>2. <u>법 제80조제3항제17호</u> 또는 제18호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p>	<p>제7조(분뇨 수집·운반의 대행)</p> <p>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1. (현행과 같음)</p> <p>2. <u>법 제80조제4항제17호</u> ----- -----.</p>
<p>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법 제80조 및 <u>영</u>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위반일시,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가산금 부과, 이의제기 등을 알려야 한다.</p>	<p>제11조(과태료 부과·징수) ① ----- --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u>영</u>”이라 한다) ----- ----- -----.</p>

현 행

【별표1】

수수료의 징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수거식 화장실

부과기준	수 수 료		
	계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분뇨처리 수수료
18ℓ당	195 원	177원	18원

2.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구 분 (부과기 준)	수 수 료		
	계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분뇨처리 수수료
기본요금 (750ℓ까 지)	11,795 원	11,045원	750원
초과요금 (매 100ℓ당)	872원	772원	100원

비고 : 1. 분뇨처리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함.

2. ~ 3. (생략)

개 정 안

【별표1】

수수료의 징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수거식 화장실

부과기준	수 수 료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분뇨처리수수료
18ℓ당	302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2.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구 분 (부과기 준)	수 수 료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분뇨처리수수료
기본요금 (750ℓ까 지)	15,370 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초과요금 (매 100ℓ당)	1,090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비고 : 1. <삭제>

2. ~ 3. (현행과 같음)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939)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2. 10. 9.(화)
-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위원회회부 : 2012. 10. 12.(금)
- 위원회심사 : 2012. 10. 17.(수)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가. 제안이유

1991년 4월 수수료 책정 이후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21년간 동결되어온 분뇨수집·운반수수료를 울산광역시에서 일괄 추진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현실화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구민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수정(안 제2조)
-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인상(안 별표1)
 - 수거식화장실(18ℓ 당) : 177원 → 302원(64.1%) 인상
 - 개인하수처리시설-기본요금(750ℓ 까지) : 11,045원 → 15,370원 (36.7%)인상
 - 초과요금(매100ℓ 당) : 772원 → 1,090원(36.5%)인상
-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징수기준 인상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안내서 및 촉구서 서식 정비(안 별지제1호, 별지제2호)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사항

4.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진만)

분뇨수집·운반수수료가 지난 1991년 책정된 이후 21년간 동결된 상태에서 광역시에서 실시한 분뇨수집·운반수수료 조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줄일 수 있는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수수료 인상은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구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행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는 선에서 수거식화장실은 기존 177원에서 230원(30%)으로 인상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본요금은 750ℓ 까지 기존 11,045원에서 13,276원(20.2%)으로 인상하며, 초과요금은 매100ℓ 당 기존 772원에서 926원(20%)으로 인상하여 대행업체의 경영개선을 유도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서비스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향후 대행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하고자 수정가결함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1】

수수료의 징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수수료의 징수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수거식 화장실

1. 수거식 화장실

부과 기준	수 수 료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분뇨처리수수료
18ℓ 당	302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부과 기준	수 수 료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분뇨처리수수료
18ℓ 당	230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2.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 시설)

2.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구분 (부과기 준)	수 수 료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분뇨처리수수료
기본요금 (750ℓ 까지)	15,370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초과요금 (매 100ℓ당)	1,090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구분 (부과기 준)	수 수 료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분뇨처리수수료
기본요금 (750ℓ 까지)	13,276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초과요금 (매 100ℓ당)	926원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처리수수료

비고 : 1. <삭제>

2. ~ 3. (현행과 같음)

비고 : 1. <삭제>

2. ~ 3. (현행과 같음)